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대한변호사협회)

2021. 5.

사법지원실 [형사]

1. 개요

- 기간 : 2021. 5. 3.(월) ~ 2021. 5. 10.(월)
- 실시 방법 및 대상자 : 대한변호사협회원 대상으로 이메일 통해 실시
- 총 설문 대상자 수 : 28,435명
- 총 설문 응답자 수 : 320명
- 응답 비율 : 1.1%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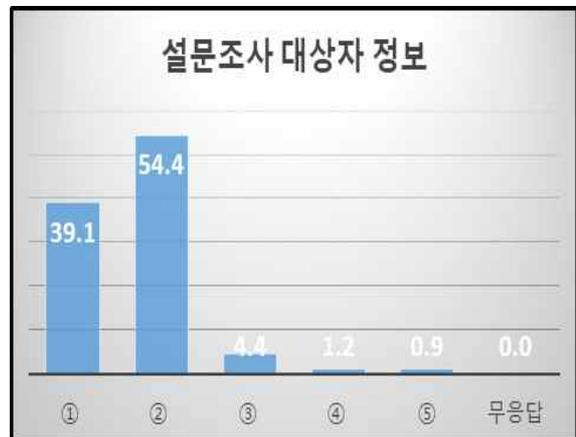
■ 설문조사 대상자 정보

1. 귀하의 직책은 무엇인가요?

- ① 개인변호사 ②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③ 사기업 사내 변호사
④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⑤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25	39.1
②	174	54.4
③	14	4.4
④	4	1.2
⑤	3	0.9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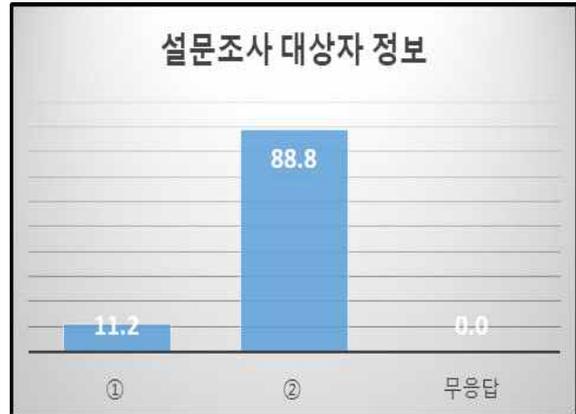


2. 구속영장 실질심사(사선, 국선 포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없다.
- ② 있다.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6	11.2
②	284	88.8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 제도 도입의 필요성

[영장심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보석조건부 영장제도)]

-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보증금,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행법의 태도]

- 영장기각결정이나 발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영장재청구와 구속적부심으로 구속과 석방을 신청하여야 함. 구속적부심에서는 기각결정, 석방결정 이외에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기소전 보석)이 가능하나, 비금전적 석방조건만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무자력자, 소년범 등의 이용이 제한됨

[각국의 구속대체제도]

- 최초기일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미국) - 체포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여 열리는 최초의 출석기일에서 서약서나 보석금 등 석방조건을 정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 구속집행유예제도(독일) -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출석의무, 주거지 이탈 금지의무, 담보 제공의무 등의 처분으로 구속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사법통제명령 제도(프랑스) - 구속과는 별도로 공무원의 정기적 출석,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정하여 사법통제명령을 내리고, 이것만으로 불충분한 때에 한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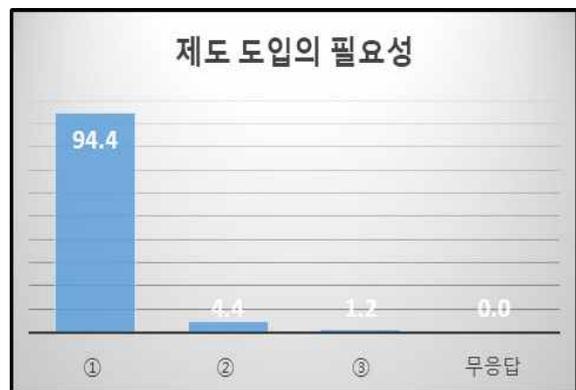


3.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구속을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및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정부안), 제18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을 대체하는 석방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신가요?

- ① 도입 필요성 있음 ② 도입 필요성 없음 ③ 모르겠음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302	94.4
②	14	4.4
③	4	1.2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4. (3-①항에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선택 가능)

- ①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의 실현에 부합함
- ② 영장심사의 본안재판화를 방지할 수 있음
- ③ 구속과 불구속의 한계에 있는 경우 구속을 하면서 조건부 석방을 하게 되면 구속과 불구속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 ④ 영장발부 후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하는 것은 우회적인 절차임
- ⑤ 보증금 납입 외 비금전적 조건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가난한 서민을 위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음
- 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피의자의 도주나 재범 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⑦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응답비율(%)	백분율(%)
①	244	80.8	27.1
②	127	42.1	14.1
③	165	54.6	18.4
④	85	28.1	9.5
⑤	107	35.4	11.9
⑥	165	54.6	18.4
⑦	6	2.0	0.6
무응답	0	0.0	0.0
합계	899	297.6	100.0



5. (3-②항에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선택 가능)

- ① 구속사유 있는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하게 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② 조건부석방은 처벌약화를 의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게 되어 부적절함
- ③ 판사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영장발부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④ 영장을 기각해야 할 사건들이 오히려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로 석방을 명하는 변형적 형태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⑤ 현행 법령에서도 구속적부심과 보석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부석방제도는 불필요함
- ⑥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응답비율(%)	백분율(%)
①	10	71.4	25.0
②	5	35.7	12.5
③	4	28.6	10.0
④	7	50.0	17.5
⑤	12	85.7	30.0
⑥	2	14.3	5.0
무응답	0	0.0	0.0
합계	40	28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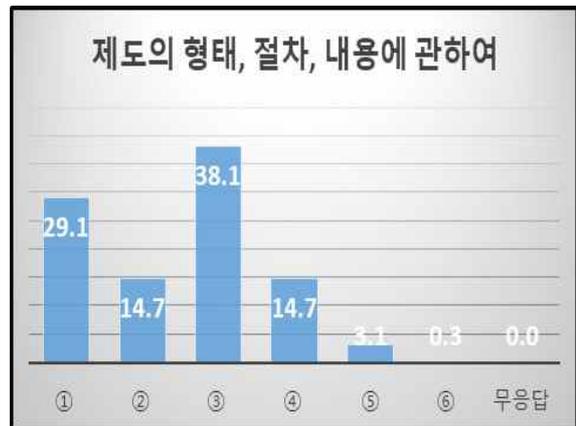
▣ 제도의 형태, 절차, 내용에 관하여

6.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을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본적인 체계와 형태는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①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조건부 석방을 명하는 형태
- ②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되 독립된 처분으로 규정하는 형태(구속영장 발부 및 별도 결정 필요)
- ③ 구속영장 발부, 기각, 조건부 석방결정 중에 택일하는 형태
- ④ 구속영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규정하는 형태(조건준수명령, 구속대체처분, 사법통제명령, 사법감시명령, 조건부과처분 등)
- ⑤ 모르겠음
- ⑥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93	29.1
②	47	14.7
③	122	38.1
④	47	14.7
⑤	10	3.1
⑥	1	0.3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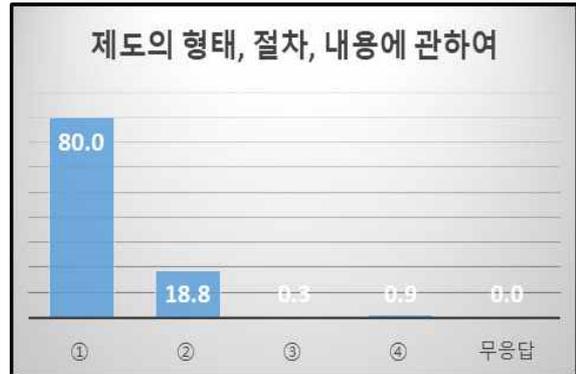
7.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조건부석방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신청권 필요함(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대체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의무화함, 대체의 무에 대한 피의자의 의견제시, 보증서 제출 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대체처분을 원활히 하는 의미가 있음)
- ② 신청권 필요하지 않음(신청이 없더라도 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면 실익이 없음,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 조건부석방신청도 따로 기각하여야 하는지 등 업무처리의 번잡 우려)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56	80.0
②	60	18.8
③	1	0.3
④	3	0.9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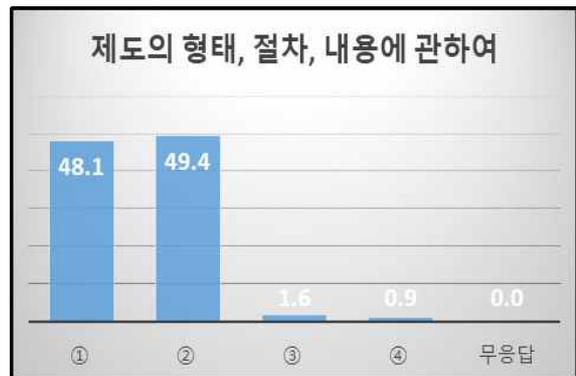


8. 검사에게 조건부석방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신청권 필요함(검사 입장에서 피의자의 출석만 담보된다면 구속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건에서 활용될 여지 있음)
- ② 신청권 필요하지 않음(구속영장 청구권이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부석방 신청권 불필요)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54	48.1
②	158	49.4
③	5	1.6
④	3	0.9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9.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를 보석제도(형사소송법 제95조)와 같이 '필요적 석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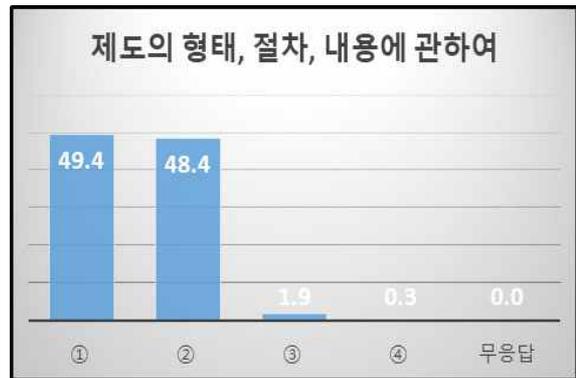
- ① 필요적 석방 규정이 필요함(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건부석방을 하도록 규정)



- ② 임의적 석방으로 해도 무방함(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재량적으로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58	49.4
②	155	48.4
③	6	1.9
④	1	0.3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10. 조건부 석방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구속사유와 중복되는 예외사유를 따로 둘 필요 없음
- ② 구속적부심의 예외사유와 같이 규정
- ③ 필요적보석의 예외사유와 같이 규정
- ④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예외사유와 같이 규정
- ⑤ 구속적부심, 보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른 별도의 기준 필요
- ⑥ 모르겠음
- ⑦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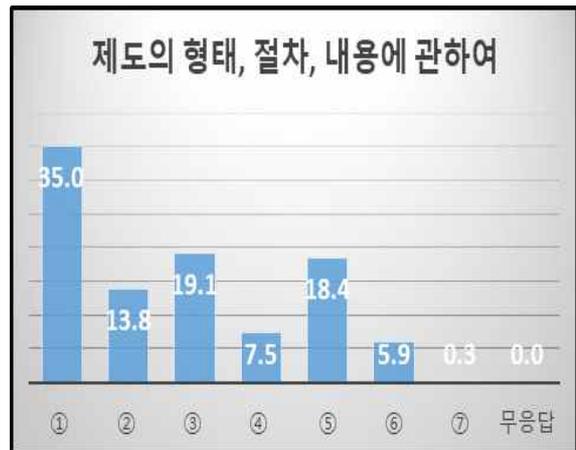
구속적부심 (형소법 제214조의2 제5항 단서)	필요적보석 예외사유 (형소법 제95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13. 의안번호 15494호로 발의된 것, 2019. 8. 8. 의안번호 21884호로 발의된 것)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



<p>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p>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p>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p>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p> <p>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p>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p> <p>3.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p>
---	---	---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12	35.0
②	44	13.8
③	61	19.1
④	24	7.5
⑤	59	18.4
⑥	19	5.9
⑦	1	0.3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11. '석방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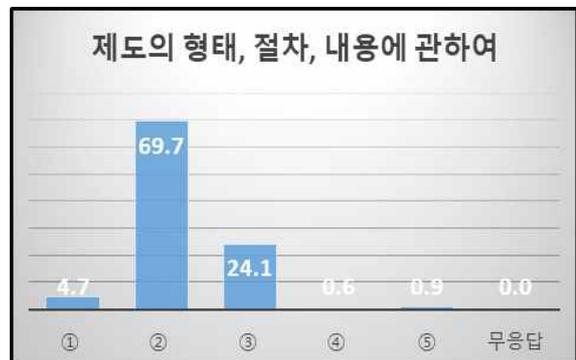
- ① 구속적부심과 같이 보증금 납입으로 제한
- ② 보석의 조건과 같이 보증금 납입 외 8가지 금전, 비금전 조건을 준용
- ③ 구속적부심, 보석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 ④ 모르겠음
- ⑤ 기타()



구속적부심 (형소법 제214조의2)	보석의 조건 (형소법 제98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13. 의안번호 15494호로 발의된 것, 2019. 8. 8. 의안번호 21884호로 발의된 것)
<p>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단서 생략)</p> <p>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p>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p>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5	4.7
②	223	69.7
③	77	24.1
④	2	0.6
⑤	3	0.9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12. 보석의 조건(형사소송법 제98조)에 정한 조건 이외에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에 적합한 석방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수선택 가능)

- ① 전화감청, 전자감응식 감시장치의 착용 등 감시조치에 동의하는 서약서의 제출
- ② 차량운행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보관
- ③ 금주, 마약 등 사용금지 ④ 무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소지 금지
- ⑤ 고용 유지, 구직활동 의무 부과 ⑥ 법원이 지정하는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금지
- ⑦ 의료기관 등에 의한 검사, 치료 ⑧ 모르겠음 ⑨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응답비율(%)	백분율(%)
①	201	62.8	18.5
②	184	57.5	17.0
③	164	51.3	15.1
④	155	48.4	14.3
⑤	61	19.1	5.6
⑥	139	43.4	12.8
⑦	165	51.6	15.2
⑧	3	0.9	0.3
⑨	13	4.1	1.2
무응답	0	0.0	0.0
합계	1,085	339.1	100.0



13. 비금전적 조건에 의한 석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방조건을 일반조건과 특별조건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성 있음(다양한 석방조건이 마련되더라도 실무운영상 보증금 납입 조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건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② 필요성 없음(비금전적 조건에 의한 석방제도의 도입 취지상 다양한 석방조건을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굳이 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 ③ 모르겠음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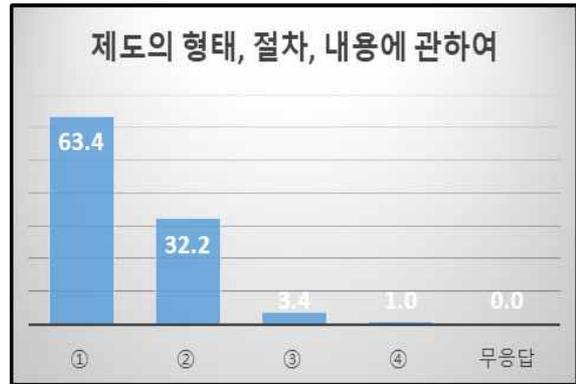
- ㉠ 일반조건 : 필요한 때에 출석할 것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나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정서를 제출하는 조건
- ㉡ 특별조건 : 위 일반적 조건만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 제한, 고용 유지, 보증금 납입 등(각호로 열거)



의 조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부가함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203	63.4
②	103	32.2
③	11	3.4
④	3	1.0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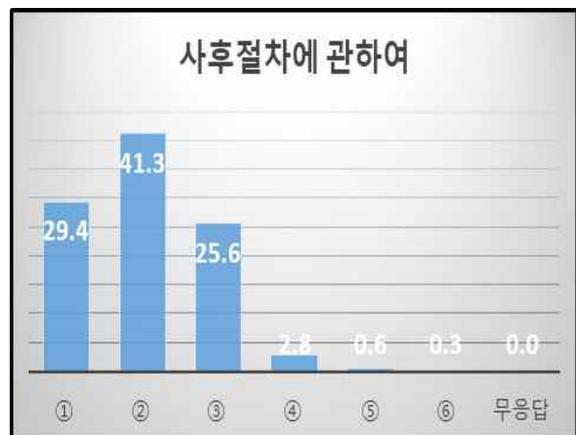
■ 사후절차에 관하여

14. 석방조건을 변경(삭제, 추가)하는 경우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적 심문으로 규정
- ② 경한 조건에서 중한 조건으로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필요적 심문으로 규정
- ③ 당사자의 심문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적 심문으로 규정
- ④ 심문이 필요하지 않음
- ⑤ 모르겠음
- ⑥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94	29.4
②	132	41.3
③	82	25.6
④	9	2.8
⑤	2	0.6
⑥	1	0.3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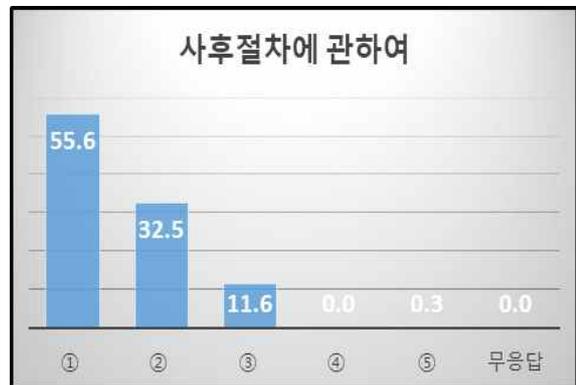


15. 석방조건을 위반하여 이를 취소하고 구금하는 경우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적 심문으로 규정
- ② 당사자의 심문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적 심문으로 규정
- ③ 심문이 필요하지 않음
- ④ 모르겠음
- ⑤ 기타()

● 결과 내용(법관)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78	55.6
②	104	32.5
③	37	11.6
④	0	0.0
⑤	1	0.3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 불복절차에 관하여

[영장항고제도에 관한 논의]

- 현행 법률의 태도 : 현행 형사소송법 해석상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재항고는 불가능함. 한편, 구속적부심에서 기각결정,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기소전 보석)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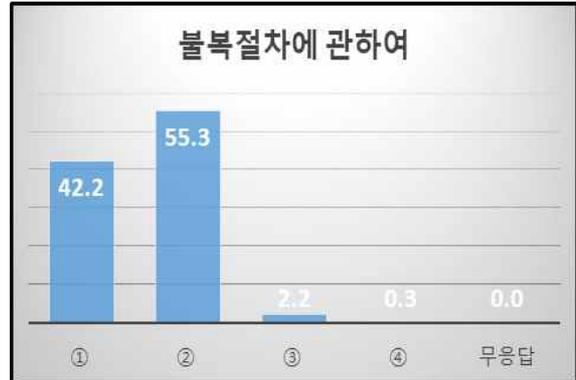
16. 현행 영장제도에서 영장항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성 있음(영장재판도 재판이므로 불복절차로서 항고제도 필요)
- ② 필요성 없음(구속적부심, 영장재청구를 통해 실질적 불복이 가능)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35	42.2
②	177	55.3
③	7	2.2
④	1	0.3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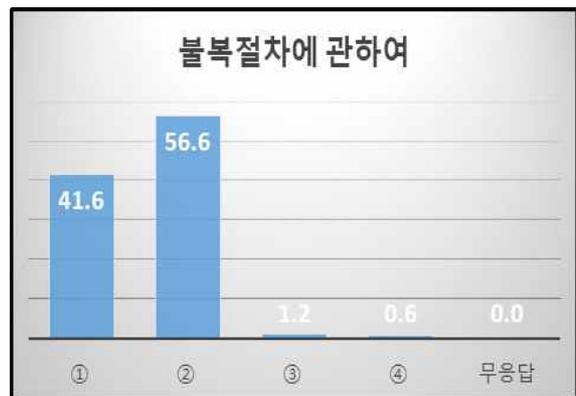


17.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구속영장 발부를 전제)이 가능해진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필요성 있음(구속적부심과의 균형상 석방조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제도 필요)
- ② 필요성 없음(구속적부심, 영장재청구를 통해 실질적 불복이 가능하고, 불복 제도의 중복으로 실무운영상 혼란 우려)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

● 결과 내용

구분	명수	백분율(%)
①	133	41.6
②	181	56.6
③	4	1.2
④	2	0.6
무응답	0	0.0
합계	320	100.0



18.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기재해주세요.

● 결과 내용

- 불구속 수사원칙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밀행성을 가진 수사방식이 거의 대



- 부분이므로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굳이 구속수사를 하는 관행은 부적절하다고 봄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고려할 때,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 절차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 조건부석방 도입시 영장기각 조건임에도 수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건부석방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도 제도 도입이 필요함 다만 유전무죄등 사법불신 방지위해 재벌등에게는 금전보다 비금전 조건을 강화해야함
 - 반드시 필요
 - 특별히 더할 의견 없습니다.
 - 신중한 인신구속제도의 운용, 다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 위 제도는 필요할 것임.
 - 좋은 제도임
 -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도입필요
 -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 있다고 생각됨
 - 제도가 규정되면 적극 활용하여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를 바램
 -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조건부 석방제도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조건부 석방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